

1. 개정이유

선박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유지의무 명확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정비사항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 유지의무(안 별표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에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격요건 유지의무 명확화

나. 용어 순화(안 제25조의2, 제28조, 제70조)

법령 용어에 대한 관련 지침에 따라 일본식 용어인 ‘감안’을 ‘고려’로, 축약어인 ‘균분’을 ‘동일하게 나누어’로, 관용적 표현인 ‘변경하는 때에는’을 ‘변경할 때에는’으로 순화하여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제정안
제25조의 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산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의 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고려하여 ----- -----.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균분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마지막 날로 한다. ③ (생략)	제28조(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동일하게 나누어 ----- -----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제정안
제70조(적용 대상) ① 처분기관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사업계획에 대한 면허 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별표 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 등 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제70조(적용 대상) ① ----- ----- ----- 변경할 때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5]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 등 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현행		제정안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생략)		가. (생략)	
나. 법 제121조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승선 중인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단서 신설>	(생략)	나. ----- ----- ----- ----- ----- ----- ----- -----, 이 경우 해당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	(현행과 같음)

현행		제정안	
2.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2.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생략)		가. (생략)	
나. 법 제121조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단서 신설>	(생략)	나. ----- -----, 이 경우 해당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85